

장애아동

제 조(정의)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상의 18세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2. 아동복지시설이란 아동복지법 16조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제 조(차별금지)

- ~~1. 장애아동은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2. 장애아동은 장애를 이유로 시설에 강제 수용되지 않아야 한다.~~
3. 장애아동의 친권자 및 양육책임자는 장애를 이유로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 학대,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 및 장애아동의 인권을 무시한 무리한 재활훈련을 시켜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부정적인 관습, 종교적 태도로 장애아동에 대한 비인권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장애아동은 교육, 훈련, 건강보호서비스, 포괄적인 재활 서비스, 취업준비, 레크레이션 기회 등을 제공하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6. 장애아동은 부모에 의해 자신의 부모에 의해 양육받을 권리가 있다.

제 조(장애아동 출생 후 바로 출생신고하여야 한다.)

교육기관, 아동복지시설의 책임자는 장애아동이 성별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조(국가의 의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들이 장애를 근거로 어떤 종류의 차별도 없이 다른 아동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권리와 기본적 자유를 누리도록 해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겪는 아동의 인격이 보장되고 재능 및 정신적, 신체적 능력이 최대한 계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들에게 적절하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하고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부모나 보호책임자에 대한 지원책을 확대하여야 한다.
4. 장애아동과 부모와 보호자, 법적책임자는 적절한 정보, 위탁, 상담을 제공 받아야 한다.
5. ~~장애아동의 육구에 따라 부모와 보호책임자의~~
6.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해 다른 자녀들과 달리 장애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거소가 결정되어서는 아니된다. 또한 부모의 이혼 등으로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과의 면접교섭권이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장애유형과 정도에 적합한 서비스 지원
8. 장애아동의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른 특수교육의 개별화 보장.

***** 참고 *****

정신보건
장애아동
보호
아동복지
법
제
16
조
제
17
조
제
18
조
제
19
조
제
20
조
제
21
조
제
22
조
제
23
조
제
24
조
제
25
조
제
26
조
제
27
조
제
28
조
제
29
조
제
30
조
제
31
조
제
32
조
제
33
조
제
34
조
제
35
조
제
36
조
제
37
조
제
38
조
제
39
조
제
40
조
제
41
조
제
42
조
제
43
조
제
44
조
제
45
조
제
46
조
제
47
조
제
48
조
제
49
조
제
50
조
제
51
조
제
52
조
제
53
조
제
54
조
제
55
조
제
56
조
제
57
조
제
58
조
제
59
조
제
60
조
제
61
조
제
62
조
제
63
조
제
64
조
제
65
조
제
66
조
제
67
조
제
68
조
제
69
조
제
70
조
제
71
조
제
72
조
제
73
조
제
74
조
제
75
조
제
76
조
제
77
조
제
78
조
제
79
조
제
80
조
제
81
조
제
82
조
제
83
조
제
84
조
제
85
조
제
86
조
제
87
조
제
88
조
제
89
조
제
90
조
제
91
조
제
92
조
제
93
조
제
94
조
제
95
조
제
96
조
제
97
조
제
98
조
제
99
조
제
100
조

제29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0조 (벌칙)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6.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2. 제1호 내지 제4호,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2.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3.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4.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